

「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 신설로 인한 이용료 등 체계를 확립하고, 구미에코랜드 시설물 이용료 등 반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 신설로 인한 내용 추가 (안 제3조, 제9조, 별표 1~별표 5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 신설에 따른 시설이용료(모노레인, 짚코스터), 이용시간 등과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짚코스터 신설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레저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에코랜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